

#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의 안  
번 호

2558

봉양순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노원구3)

-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님,  
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- 반갑습니다.  
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봉양순 의원입니다.
- 오늘 여러 위원들님께 「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(도장시설 등) 대기오염 방지시설  
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집행률 저조 및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에 따른  
국비 미편성에 따라 올해부터 동 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.

- 그러나 서울연구원 등은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방지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, 방지 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활성탄 교체 지원 또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기존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(세탁소 등)에 관한 규제 조항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개선 촉진과 지원 정책을 견인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첫째, 자동차 도장시설 사업자에 대기오염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(안 제20조)
- 둘째,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권고로 완화함 (안제21조)
- 셋째, 대기환경개선 관련 우수사례 교육 및 홍보 지원, 표창 규정을 신설함 (안 제22조, 제23조)
- 아무쪼록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 대기환경개선을 촉진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여 탄소중립과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「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- 감사합니다!